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임시회 '19. 4. 18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·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·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대상 규정 (안 제5조)
- 다.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내용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○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1항에는,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 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현재 충북에는 약 4만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, ※ 충북 등록 여성장애인 현황: 40,405명(통계청자료, 2016년 12월 기준)
 - 장애종류 및 정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, 의료진의 장애 인식 및 특성에 대한 경험·이해부족 및 편의시설, 장애인 진료를 위한 의료 기구·설비의 부족 등으로 임신·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 병원 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.
- 도지사 민선7기 공약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사업이 포함된 바, 충북도 내 여성장애인들이 신체적·심리적 불편 없이 산부인과 의료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〈민선7기 도지사 공약〉 72.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

- 사업기간: 2019~2022년
- 사 업 량: 도 내 6개소(권역별)
- 사업내용: 장애인 편의시설, 장애인 편의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등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에는 "여성장애인이 임신·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 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·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"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O 안 제4조에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 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으로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함.

- 병원급 의료기관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별표3에 따라 30명 이상의 입원실, 수술실, 임상 검사실, 방사선 장치 및 의무 기록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, 일반 의원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인 바, 이를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현재 충북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6개소[중부권(청주포함) 4, 북부권 1, 남부권 1]에 불과해 지정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. 따라서 지정 과정에 있어 6개소 모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.
- O 안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.

<여성장애인 친화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>

- 1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
- 2.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
- 3.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
-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,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법적 문제가 없고,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